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0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2월 26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이 도시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과 포털시스템 구축, 회원관리 등을 담고 있으므로 안 제12조의 2제목을 ‘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등’으로 수정하고, 포털의 목적을 ‘회원관리’에서 ‘종합적인 정보 제공, 홍보, 소통, 교육지원 등’으로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 제목을 ‘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’ 등으로 수정함(안 제12조의2).
- 나. 도시농업포털의 구축 목적을 확대함(안 제12조의2제3항).
- 다.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함(안 부칙).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 제12조의2의 제목 “(도시농업인 등의 체계적 지원)”을 “(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등 체계적”을 “등을 체계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업무”를 “업무와 종합적인 정보 제공, 홍보, 소통, 교육지원 등”으로, “서울도시농업포털 시스템”을 “서울도시농업포털”로 한다.

안 부칙 중 “2019년 2월 일”을 “공포한 날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등) ① 시장은 도시농업인, 도시농업 공동체, 도시농업 관련 기관·단체 등(이하“도시농업인 등”이라 함)을 서울 도시농업 회원으로 가입토록 하여 각각의 활동수준 및 여건에 맞게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와 종합적인 정보 제공, 홍보, 소통, 교육지원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서울도시농업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 등에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가입 절차, 회원정보 처리, 지원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2조의2(도시농업인 등의 회원 관리 등) ① 시장은 도시농업인, 도시농업공동체, 도시농업 관련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도시농업인 등” 이라 함)을 서울도시농업 회원으로 가입토록 하여 각각의 활동수준 및 여건에 맞게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와 종합적인 정보 제공, 홍보, 소통, 교육지원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서울도시농업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시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 등에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가입 절차, 회원정보 처리, 지원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